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개선방안*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송광섭*

〈목 차〉

I. 서론	IV. 피해자 안전조치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
II. 범죄피해자보호법	신변안전을 위한 경호·경비-
III. 여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V. 결론

〈요 약〉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보호, 증인보호, 가정폭력, 성폭력

이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 론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는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아주 미약하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는 범죄인에 대한 공식적 사법절차가 개시되어도 범인의 체포, 기소·불기소 여부, 재판진행상황 등의 정보가 곧바로 제공되지 않아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불충분하게 보장되어진 권리마저도 제대로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범죄의 피해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육체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심리적¹⁾·물질적으로도 추산할 수 없는 엄청난 유·무형적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특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제2차적인 피해자화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범죄건수가 230만건 이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현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문제가 국민적·사회적 큰 명제로 취급되어, 경찰·검찰 등 관련기관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마련되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중요한 사법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의 주요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내용,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자보호·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²⁾

1) 범죄로 인한 심리적 상처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그로 인한 후유증이다.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심리적 외상(trauma)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항구적인 심리적 장애로 발전하게 된다. PTSD는 개인의 선천적 취약성 또는 외상성 신경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외상성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서는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한 법률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배상명령제도)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제외한다.

II. 범죄피해자보호법

1. 주요내용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다도 상대적으로 크게 보장되었던 가해자의 인권에 비해 오히려 국가적·사회적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소홀하게 취급되어졌던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볼 수 있다.³⁾ 이 법은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은 열악한 상태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2조에 기본이념으로,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으로서 범죄피해자⁴⁾는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제4조·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1조)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연구·홍보 및 교육,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12조 및 제13조)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3) 세계 각국들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에 제정된 '피해자·증인보호법' (The Federal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을 보완하여 2004년 10월 30일 「범죄피해자기본법」(The Justice for All Act)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1990년의 '피해자헌장' (Victim Chart)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 규정을 둔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The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 Act)을 2004년 11월 15일 제정하였으며, 일본은 2004년 12월 1일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을, 대만은 이 보다 앞서 1998년 5월 27일 「범죄피해인보호법」을 제정하였다.

4)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의 의미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제3조 제1항).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법은 모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법인⁵⁾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제16조).

2. 문제점과 개선방안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규정내용 중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 제12조에는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3조에는 법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연도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지원법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18조에는 지원법인이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위 조항들은 먼저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내용 자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사문화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기관

5)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시초는 2003년 9월 5일에서 설립된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이다. 이후 2003년 11월 23일에 대전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가 순수 민간주도형이었다면, 대전 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전국적인 피해자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4년 10월 1일 전국적으로 김천·구미형과 대전형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센터를 설립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 현재 지검과 지청단위별로 55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참고로 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센터의 활동실적>

전화·인터넷상담	면접상담	수사기관 법정동행	화해·중재	긴급구호 의료지원	법률구조 (의뢰)	기타	계
6,188	4,479	236	1,163	410	1,805	1,570	15,829

출처: 법무부(2006.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 자료집: 175

인지 불명확하여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보조금이 사용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으로도 책임행정에 모순이 된다.⁶⁾ 현실적으로 2006년도 법무부가 지원법인에 지원한 예산은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법인이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보조금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절차적 모순을 안고 있기도 하다.⁷⁾

따라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다음 전문부서 내지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을 법무부장관이 반환받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불합리한 절차적 모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 법 제19조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법인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고, 등록지원법인의 임·직원이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직무정지·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지도감독권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민간단체를 법무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⁸⁾ 물론 보조금지급에 따른 사전·사후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지원센터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환경 조성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 법은 법인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 예컨대 피해자의 변호사를 위한 비용, 피해자 혹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부분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2005: 10(김용세교수의 의견임).

7) 법무부는 2006년 지원법인에 지급할 보조금으로 10억원을 확보하여 등록법인에 대하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10억을 55개 지원센터에 균등 배분할 경우 약 1,850만 원 정도 지급될 것인데, 이 금액은 지원센터 상근 직원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할 액수이다.

8) 이호중, 2005.6: 12

가 있다.⁹⁾

넷째, 이 법 제1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노동부·기획예산처 차관 및 법원행정처장·대검찰청차장·검사·경찰청의 차장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이들 여러 부처의 의견을 통합·조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직속으로 총괄하게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년 12월 1일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9년 11월에 이미 정부 안에 ‘범죄피해자대책관계성청연락회의’가 설치되어 법무성·경찰청·해상보안청·노동성·후생성·문부성·자치성 등이 협의하여 부처별로 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 후 2005년 4월 1일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이 시행되자 내각부에 ‘범죄피해자 등 시책추진회의’를 설치하고 법무대신·총무대신·후생노동대신·국토교통대신·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등 각료 5명과 민간인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시 전문위원 11명을 지정하여 심의를 계속한 끝에 2005년 12월 27일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것이다.

다섯째, 이 법은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전제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조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물론 제4조에는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들 통해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¹⁰⁾

여섯째,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할 책무를 부여하면서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서만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정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구 단위까지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는

9)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보조금 신청서에 들어갈 항목으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최근 1년 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7. 피해자 지원사업의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여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확보하고 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이들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약 125억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여 집행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전국적인 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¹¹⁾

Ⅲ. 여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내용

이 법은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¹²⁾

이 법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수사와 공판절차상 보호규정으로서 동법에서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던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제8조)¹³⁾ 등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고소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배제하고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11) 조균석, 2006: 57

12)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이 된 사건은 1988년 2월 윤간의 위기에 직면한 한 주부가 범인의 혀를 깨문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이 성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보다 그녀의 행위, 이전의 직업 등이 쟁점화되어 범죄로 인한 피해보다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에 각종 여성단체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항소심에 개입하였고 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재판부의 남성 중심적인 판결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성폭력방지법의 입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후 여성단체들은 범죄발생 후 사법부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3) 본 규정에서의 장애의 범위는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까지 포함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있으며 고소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다(제9조). 친족간간의 주체도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제7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그 신원과 사생활 비밀의 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제2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 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제21조 제2항).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제22조 제1항),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재판장은 비공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재판 및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2조의3).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의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심문할 수 있다(제22조의4).¹⁴⁾

이 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제25조).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성폭력의 개념 및 성희롱의 입법화

성범죄에 무엇을 포함하여 정의할 것인가¹⁵⁾에 관해서는 일정하지 않으나,¹⁶⁾ 성범

14) 송기오·강경래, 2005: 189-191

15) 형법상 성범죄는 편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로는 형법상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죄(형법 제297~제305조)와 성풍속을 해하는 죄(형법 제241~제245조)를 의미하며, 이 범죄 중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범죄(예컨대 강간, 강제추행)를 최협의의 성범죄라 할 수 있다. 이밖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도강간(제399조), 해상강도강간(제340조 제3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가 있고, 이들의 성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범죄의 동기가 성적 욕구에 기인해 있는 절도, 주거침입(의설목적), 상해(sadism), 살인(성적충동) 등을 포함한 성범죄를 최광의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송광섭, 2003: 852).

16) 성범죄의 개념과 유의한 개념으로서 성폭력이 있다. 성폭력은 법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

되는 그 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정의하여, 성폭력을 원하지 않는 인간의 성을 침해한 폭력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¹⁷⁾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성희롱이란 영어의 sexual harassment(성적 괴롭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¹⁸⁾ 성희롱의 개념은 학문적·법률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¹⁹⁾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입법조치가 되어 있으며,²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다.²¹⁾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이 입법화되어 있다.²²⁾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대부분은 단지 직장 내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에 대한 행정적 제재나 민사법적 구제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의 심각성에 비추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²³⁾의 제한적 입법태도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²⁴⁾

학적, 여성학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어린이나 노약자 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이 포함된다(송광섭, 2003: 853).

17)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18) 성희롱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적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김계현·김은경·신상숙·박정미·김보명, 2005: 11).

19) 한정자·김인순(2001: 14-17)은 성희롱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20) 송광섭(2003: 867)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대응방법·처벌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22) 여성발전기본법상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4호).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0년 2월 20일 1997년 7월 직장여성 809명을 상대로 과거 6개월간 성희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여성의 63.5%가 성적 농담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34.9%가 가슴, 엉덩이 만지기 등 신체적 성희롱을, 25.1%가 술시중 등의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발표하였다.

24) 김용우(2001. 6: 36)는 성희롱의 형사처벌에 대한 입법적 논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단지 사업주에게 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의무를 부여하고만 있다(제13조). 그러나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39조 제1항),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7조 제2항).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다.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은 노동관련법이나 인권법으로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고, 성희롱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국가들도 있다. 그 외에 법해석과 지침에 의하여 성희롱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²⁵⁾

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 형법(1992년 7월 개정, 1994년 3월 시행)을 통해 노동법과 같이 직권남용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신형법 제222-33조는 성적 희롱행위라는 제목하에 “성적 호감을 갖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명령, 협박하거나 강제적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희롱행위를 한 자는 1년간의 구금형 및 100,000프랑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는 자가 자기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게 행한 성희롱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정 형법(1962년 12월 제정, 1992년 11월 개정)은 제4장 제7조 및 제6장 제7조의2에 육체적으로 짓궂게 괴롭히거나 경솔한 행동으로 희롱하는 것, 적대적인 성향의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추하게 행동하는 것 또는 외설적인 행위로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sexual molestation’ (성적 괴롭힘)²⁶⁾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방형법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외설적 전화 등 몇몇 유형의 성희롱을 규율하고 있지만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²⁷⁾ 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주의 형법은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성폭행을 포함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목적의 신체적 접촉이나 타인을 괴롭힐 목적의 외설적 전화와 같은 성희롱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적 요구에 대한 교환적 대가로 직업과 관련하여 명백한 특혜가 주어지는 대가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매춘을 교사(solicitation)한 행위로서 기소될 수 있다.²⁸⁾ 또한 모범형법전 제213.5조는 “그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모욕 또는 경

25) 대표적으로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성희롱이 성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의 유형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1981년 성희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성희롱을 정의하고 행동유형과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6) 스웨덴의 경우에는 sexual harassment 대신에 sexual moles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법원은 sexual harassment가 문제되는 상황에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ILO, 1992: 147-150).

27) 47 USC, Section 223(1988).

28)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647(b).

악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성기를 노출” 하는 음란성 노출(indecent exposure)을 경죄²⁹⁾로 처벌하고 있다.³⁰⁾

(2) 친고죄의 전면적 폐지

성범죄가 친고죄이어야 하는 법적 정당성의 이유의 첫 번째 조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고소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도 커야 한다. 대부분의 학자나 법원의 판례는 성범죄를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를 피해자의 명예 내지는 사생활의 보호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교형량되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개인적·자의적 의사에 귀속시킨 댓가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명예와 사생활보호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단지 고소하지 않아 처벌을 포기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심히 의심스러운 발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또는 후환, 명예실추 등이 두려워 고소를 기피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처도 전혀 할 수 없고, 성폭력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비친고죄로 하여 성폭력범죄에 국가적·사회적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배상명령의 신청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를 추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폭력에 의한 상처의 치료 및 이후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권리이다.

29) 미국형법상 경죄(misdemeanor)는 1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만을 부과하는 범죄를 말한다.

30) 독일형법의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174조에 ‘피보호자 성적 악용’(Sexuell Mißbrauch von Schutzbefohlenen)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는 ① 교육·직업교육·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받은 16세 미만자, ② 교육·직업교육·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받거나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 속하는 18세 미만자, ③ 교육·직업교육·보호, 업무 또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중속된 지위를 이용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행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이와 같은 피보호자의 성적 흥분을 야기하기 위하여 피보호자의 면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행위,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의 면전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부노출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성인 남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3조 제1항).

현재 배상명령제도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배척사유³¹⁾와 홍보·인식부족, 배상명령신청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을 확대하기 전에 현행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배척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 내에서의 배상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는 형사절차내에서 이 제도를 절차적·의무적으로 고지·보장하여야 하고, 일반적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를 허용하여 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명령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²⁾

(4) 공소시효의 배제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관련 단체들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성범죄를 자행한 범죄자들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배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다른 흉악범죄와의 형평성과도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아동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질적 혹은 형식적인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³³⁾ 왜냐하면 아동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책감과 수치심,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불신·비난에 대한 우려, 주변인의 충격에 대한 우려,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가족·친척관계 고려, 가해자의 협박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동일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³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중단 내지 연장을 인정하는 포괄적인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성범죄로 파급되는 “공포, 혼돈, 정신적 피해(fear, confusion, psychological damage)

31)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유는,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32) 법무부에서 이러한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법무부, 2004.9.1: 17).

33) 이에 대한 주장은, 박용철, 2006: 223

34)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강간 및 강제추행죄 7년,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0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5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7년, 동 죄명의 치사상죄 10년 등으로 국내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충성심 등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서야 수사기관에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 중론이다.³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각주는 공소시효배제 내지는 연장제도를 두고 있다. 예컨대 메릴랜드주의 경우 살인죄와 더불어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알라바마 주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어떠한 형태의 성범죄에 관해서도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알래스카주의 경우 소위 A급 혹은 B급에 해당하는 중죄로 여겨지는 강간과 동일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이른바 중죄에 해당하는 성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델라웨어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있지 않고, 미연방인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강간과 1級 성폭행’ (first degree sexual assault), 1級 혹은 2級 아동 성폭행(first or second degree child molestation sexual assault)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와이오밍주의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켄터키·메릴랜드·노스 캐롤라이나·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중범죄에 대하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³⁶⁾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주요내용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6조 제2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권의 제한규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정

35) 박용철, 2006: 229

36) 박용철, 2006: 227-228. 이와 같이 각주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실상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언제나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정도의 영구적인 공소시효의 부존재를 천명해 놓은 입법례는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주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주고 성년이 되는 18세까지의 공소시효의 중단을 규정해 놓은 수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³⁷⁾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일정한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제5조 제1호),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동조 제2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인도(동조 제3호),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제5조 제4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중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제40조)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9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 의료기관 또는 기타 요양소에서 위탁(제3호),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4호)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9조). 이와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56조),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제1호),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제2호)을 명할 수 있다(제57조 제1항).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제58조 제1항),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제58조 제3항).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7)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란 ①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종사자와 그 장, ②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제4조 제2항), ④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실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제4조 제3항)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하면,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1호),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2호) 등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제57조 제1항). 따라서 현행법상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내려지게 되어 있는 가해자에 대한 금치산선고, 자녀의 양육권박탈, 유아인도명령 등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청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에 병합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이혼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이혼의 전단계로서의 법원의 별거판결을 입법화하여 법원의 별거명령과 동시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경제적·신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거판결로 부부간에는 별거가 인용되므로 별거부부는 동거의무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교섭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아울러 입법화하여야 한다.³⁸⁾

3. 성매매특별법

1) 주요내용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³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①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②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38) 송광섭, 2000: 127

39)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주요한 배경에는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잇따라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사건이 있다. 이 두 차례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여성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여성국회의원과 여성단체들이 성매매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③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이러한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는, ① 처벌하지 아니하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연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성매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허용되는데,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⁴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 밖에도 성매매피해자에게는 의료비지원(제14조)과 함께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건상담과 지도, 성매매피해자의 치료 등을 하고 있다(제14조의2).

40) 지원시설의 종류에는 일반지원시설(숙식제공,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이 있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매매피해자의 입증문제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되고,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신고·고소가 활발해지고, 단속된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여성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⁴¹⁾

또한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피해자 신고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신고를 위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전국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센터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성매매단속은 성판매자, 성구매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성매매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기법의 개발과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의지가 필요하고, 수사기관과 업주와의 유착관계의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성매매피해자 조사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조항이 모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의 상황을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조사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성매매피해자 판단과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자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었던 사람이 또 다시 단속·검거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성매매피해자로 계속 인정한다면 계속 단속되어 올 경우 계속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섯째, 성매매피해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자와 관련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대책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연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확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41) 윤덕경·변화순·박선영(2005: 143)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IV. 피해자 안전조치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신변안전을 위한 경호·경비-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주요내용

이 법은 1990년 12월 31일에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⁴²⁾

이 법 제6조에서는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해자들이 신고나 고소를 하고 공판정에서 증언을 하는 등의 전 과정에서 항상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제4항).

한편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제8조).⁴³⁾

42) 그 입법 배경으로는 1990년 6월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법정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폭력조직의 행동대원들로부터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증인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즉 동법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한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 등을 하는 경우 가해자나 그의 동료로부터 보복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 위협제거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법 제6조의 규정은 우선 피해자에게는 신청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보석과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취소사유로서만 인정하고 있어 보호의 정도가 너무 미약하다. 즉 이를 구속사유 혹은 보석의 제외사유로 규정⁴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⁴⁵⁾ 또한 제8조의 규정에서는 피해자 내지 증인의 진술내용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 내지 증인보호를 위해서 이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⁴⁶⁾

한편 이 법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직접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의 일부만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특히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현재 이 법은 의미가 퇴색되었다.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 주요내용

이 법은 1999년 8월 31일 제정되고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에서 ‘범죄신고’라 함은 “고소·고발·신고·진정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 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정보 또는 검거 활동”이라 규정하고(제2조 제2항) 있다. 따라서 위 범죄신고를 하는 행위자 모두는 범죄신고자가 되는 것이며, 고소권자인 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률로서 의미가 있는, 피해자 보호의 근간이 되는 규정이다.

이 법은 특정범죄⁴⁷⁾에 관한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⁴⁸⁾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

43) 송기오·강경래, 2005: 188-189

44) 송광섭, 2000: 124

45) 이재상·이호중, 1993: 59

46) 이재상·이호중, 1993: 61

47) 본 법에서 특정범죄라 함은 ①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②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의 단체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2항).

48)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 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은 특정범죄에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그 운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 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 신고자 등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보좌인은 범죄 신고자 등의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대통령령⁴⁹⁾이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제6조 제2항).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류 등에 기재하고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 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고 하여 종국적으로는 인적사항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이 법에 규정된 경우⁵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보고되고 있는 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된다(제8조)는 인적사항 공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 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제11조 제5항).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범죄 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주거지나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범죄 신고자의 신

를 말한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4항).

49)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보좌인의 자격은, ① 학교·사회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② 법률구조법 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직원, ③ 범죄 신고자등의 고용주, ④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 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50)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에는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변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법의 문제점은 이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를 국민들이 실감할 수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⁵¹⁾ 이 법률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⁵²⁾

첫째, 이 법은 용어의 정의상 특정범죄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 등이 보호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적용범위에 있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 신고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 즉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인적 사항의 기재생략과 관련하여, 제7조 제1항은 범죄 신고자 본인의 신청 권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목적인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형사절차에 협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방위를 도모한다’ 라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즉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하려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인적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 법 제8조에 인적사항 공개금지규정을 두면서 제9조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제9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범죄피해자가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신문 받는 과정에서 그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 및 사생활 존중규정을 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⁵³⁾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또는 「특정강력

51)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제보자)와 증인의 법정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보복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될지 미지수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범죄(범행동기별)는 2000년 5465건, 2001년 4881건, 2002년 4264건, 2003년 3347건으로 줄어들다가 2004년 5543건으로 급증했다. 2005년에도 4581건을 기록했다. 보복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도 같은 기간 216건, 223건, 250건, 241건, 255건, 226건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한 경우는 2000년 64건, 2004년 50건, 2005년 58건, 2006년 7월 32건 등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1990년 증인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특가법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적극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보복범죄에 관해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국민일보, 2006. 10. 18).

5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병관, 2001: 171-180; 김덕재, 2006.1: 53-55

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규정으로써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건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신변안전조치의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이용 실적이 미미하므로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⁵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⁵⁵⁾

V. 결 론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제정된 주요 법률들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은 아직 충분하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외형적 모습과 틀은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하여 자칫하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과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국가적 책무이며,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인 시민들이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치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방안들이 그 이념과 목적에 합당하고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 54) 미국의 경우에는 조직범죄활동과 중대범죄와 관련된 소송절차에 있어서 증인보호프로그램이 1970년의 「조직범죄규제법」, 1984년의 「증인보호개혁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송광섭, 2003: 706).
- 55) 현재 법무부는 강력, 마약, 조직폭력 범죄에만 제한되어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반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적용대상을 죄명으로 특정하여 확대하는 이외에도 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인 내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동심의회’를 통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직용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곽병선(2006),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김덕재(2006.1),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 개선방안(법무부 범죄피해자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종합대책 추진자료집」, 법무부.
- 김계현·김은경·신상숙·박정미·김보명(2005),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정책 연구」, 학지사.
- 김용우(2006.1), 「직성성희롱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국회사무처 법제실.
- 류병관(2001),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박용철(2006),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에 관한 제문제-미국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 법무부(2004.9.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설명자료」.
- 법무부(2006.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 자료집」.
- 송기오·강경래(2005),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광섭(2003),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 송광섭(2003), 「형사소송법」, 유스티니아누스.
- 송광섭(2000),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강화,”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 이재상·이호중(1993),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호중(2005.6), “피해자보호방안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보호방안 간담회 결과자료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 조균석(2006),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윤덕경·변화순·박선영(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정자·김인순(2001),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ILO(1992), Conditions of Work Digest: Sexual Harassment, Vol. 11.
「국민일보」(2006. 10. 18).

ABSTRACT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Song, Kwang-Soub

Every crime involves a victim and an offender. The offender, from the star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considered as a suspect. After prosecution, he/she becomes the accused, and under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has the right to enforce the contents of the acts.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or his/her family, despite being the person harmed, has very few and comparatively weak rights.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Korean criminal justice has recently recognise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victim' as a major proposition, and the police as well as the prosecutor's office have been releas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Setting the above as the background, this thesis deals with the current victim protection acts and discusses the methods to improve them. This study will investigate a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method of victim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Korea's laws regarding victim protection are not satisfactory, however it is fitting to say that it is certainly an external outline of what it should be. This has been due to the enforcement and creation of 'criminal victim protection' and has acted as a key to more improvements ever since.

Despite this, the lack of commitment in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force these laws has now produced a possibility of the laws proving to be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protection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to be more practical and secure.

Despite this the lack of commitment in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force these laws has now produced a possibility of the laws proving to be nothing but jus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protection related laws need to revise to be more practical and secure.

Key Word: Victim, Offender, Victim Protection, Criminal Victim Protection, Victim Support